

결 정

2018 - 3035 신문윤리강령 위반
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

주 문

세계일보(segye.com) 2017년 12월 3일자 「남편 잃은 며느리에 상습 성폭행·임신까지... ‘인면수심’ 시아버지」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1.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세계일보	연합뉴스
남편 잃은 며느리에 상습 성폭행·임신까지... '인면수심' 시아버지 입력 : 2017-12-03 14:29:40 수정 : 2017-12-03 14:29:40	며느리 상습 성폭행·임신까지...70대 징역 7년 선고 송고시간 2017/12/03 07:00
<u>아들이 숨지고 며칠 뒤부터 1년 9개월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.</u>	<u>(의정부=연합뉴스) 김도윤 기자= 아들이 숨지고 며칠 뒤부터 1년 9개월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.</u>
<u>이 남성은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키기도 했다.</u>	<u>이 남성은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시키기도 했다.</u>
<u>재판부는 "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(人面獸心) 범행"이라며 분노했다.</u>	<u>재판부는 "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(人面獸心) 범행"이라며 분노했다.</u>
<u>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(노태선 부장판사)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(70)씨에게 징역 7년을</u>	<u>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(노태선 부장판사)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(70)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</u>

<p><u>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.</u></p> <p><u>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.</u></p> <p><u>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던 중 2015년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지자 슬픔에 잠겼다.</u></p> <p><u>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시부모까지 모셔야 하는 처지를 막막해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.</u></p> <p><u>남편이 세상을 뜨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이씨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.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기가 막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.</u></p> <p><u>그러나 이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, 강제추행, 유사강간 등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.</u></p> <p><u>이씨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A씨를 강간했다. TV를 보거나 부엌에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.</u></p> <p><u>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.</u></p> <p><u>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A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했으며 "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"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.</u></p>	<p><u>다고 3일 밝혔다.</u></p> <p><u>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.</u></p> <p><u>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던 중 2015년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지자 슬픔에 잠겼다.</u></p> <p><u>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시부모까지 모셔야 하는 처지를 막막해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.</u></p> <p><u>남편이 세상을 뜨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이씨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.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기가 막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.</u></p> <p><u>그러나 이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, 강제추행, 유사강간 등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.</u></p> <p><u>이씨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A씨를 강간했다. TV를 보거나 부엌에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.</u></p> <p><u>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.</u></p> <p><u>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A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했으며 "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"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.</u></p>
--	---

<p>A씨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신고도 못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.</p> <p>견디다 못한 A씨는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씨는 강간, 강제추행, 유사강간, 특수협박,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</p> <p>재판부는 "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,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"며 "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"고 판시했다.</p> <p>이어 "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·낙태까지 하게 된 점,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·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"고 덧붙였다.</p> <p>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"A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 우려와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"며 기각했다.</p> <p>의정부=송동근 기자 sdk@segye.com 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71203000723</p>	<p>A씨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신고도 못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.</p> <p>견디다 못한 A씨는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씨는 강간, 강제추행, 유사강간, 특수협박,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</p> <p>재판부는 "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,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"며 "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"고 판시했다.</p> <p>이어 "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·낙태까지 하게 된 점,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·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"고 덧붙였다.</p> <p>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"오히려 A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"며 기각했다.</p> <p>kyoon@yna.co.kr 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12/01/0200000000AKR20171201161600060.HTML?input=1195m</p>
--	---

2.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12월 3일 7시에 송고한 「며느리 상습 성폭행·임신까지...70대 징역 7년 선고」 제목의 기사를 한 문장만 수정한 채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다.

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제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, ②(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등 현	이등현
	장 인 철	장인철
	강 희	강희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제와 인용」 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. ②(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)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.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,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.